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2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15.
4. 회부일자 : 2021. 10. 20.

II. 제안이유

-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실적이 저조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최근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는 포함하는 한편, 조문에 남아 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잘못된 표현 등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범위 확장 (안 제1조)
2. 개최실적 저조한 위원회 삭제, 최근 설치 위원회 포함 (안 제2조)
3.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안 제4조)

4. 잘못된 표기는 바로 잡고, 따로 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없애 간결하게 하며, 일본식 표현, 불필요한 한자어, 잘못된 피동표현, 어색한 조사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안 제3조,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7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 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지원과 협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협의 완료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1. 9.8. ~ 9.28.)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교육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별첨 4)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권고의견을 부분수용함 (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27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 실적 및 역할 유무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안 제2조제1항)

-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위원회 중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3호)와 사학정책자문위원회(22호)를 삭제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24호)를 신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은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¹⁾ 및 동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동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등 16개의 자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6개의 자문위원회 중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역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제 위원회 개최는 2013년 이후 전무한 상황입니다.

1)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더욱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²⁾을 통해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년째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회의도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기 2개의 자문위원회를 안 제2조에서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의 남설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타시도 일반직 등 공무원 비율 현황

구분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사학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경과	1기: `11.7.20.~`13.7.19. 2기: `13.11.21.~`15.11.20. 3기: 미구성 4기: `17.9.11.~`19.9.10. 5기: `19.10.1.~`21.9.30.	1기: `11.6.17.~`13.6.16. 2기: `13.7.19.~`15.7.18. 3기: 미구성 4기: 미구성 5기: 미구성
개최 실적	1기: 2011년 3회, 2012년 3회 이후 개최 실적 없음	1기: 2011년 3회 2기: 2013년 2회 이후 개최 실적 없음

- 한편 안 제2조제1항제24호는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는 이미 별도의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4월 2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 소속 자문위원회의 남설과 산재를 방지함으로써

2) 행정자치부 2015. 9. 10 보도자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참고.

- (미개최 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제출
- (유사·중복 위원회)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
- (비효율 위원회) 유형별로 구분하여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수를 각각 1명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원수를 1명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다의적 해석 여지를 없애고 동 조례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³⁾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된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제외한 16개의 정책자문위원회 중 6개의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양성평등법」의 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위원회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당장 조정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향후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성별 구성 현황

(단위 : 명)

순	위원회명	인원 A	특정 성별 6/10 초과 불가				비고
			A×0.6	남	여	준수여부	
1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21	12.6	9	12	○	
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5	9	6	9	○	
3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14	8.4	7	7	○	
4	과학교육정책자문위원회	15	9	10	5	남 초과	
5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5	9	8	7	○	
6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15	9	10	5	남 초과	
7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15	9	7	8	○	
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13	7.8	5	8	여 초과	
9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14	8.4	6	8	○	
10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15	9	8	7	○	
11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15	9	9	6	○	
12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3	7.8	9	4	남 초과	
13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15	9	5	10	여 초과	
1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15	9	9	6	○	
15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10	6	10	0	남 초과	개최실적 저조
16	사학정책자문위원회						미구성
17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15	9	8	7	○	2020 신설
합계		235		126	109	미준수 6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